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가 되는 방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순위 자격 요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 주택으로 8.2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조건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신청 조건	① 귀하는 세대주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② 귀하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③ 무주택이거나, 1주택(분양권 등 포함)만 소유하고 계십니까?(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④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습니까?(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⑤ 청약통장 1순위자 입니까? (표1 참조)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상기 5가지 항목 중 1가지라도 NO에 해당되신다면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아파트투유(www.ap2you.com)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 및 조회하실 수 있으니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청약 전에 세대주 및 세대원의 당첨 사실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세대당 1인만 청약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는 동일세대로 봄)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 분양권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공급계약 및 매매를 통해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당 분양권 매수자는 제외)

[표1] 지역별 1순위 청약자격 및 예치 기준금액

구분	성남시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m ²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해당지역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2순위는 청약 예치금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한합니다.
- ※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모든 유형에 접수 불가.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 사실은 청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지역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 제한 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안내

인터넷 청약 방법

1	인터넷뱅킹 가입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2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부여 받음	3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4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아파트투유 사이트 www.ap2you.com)	국민은행 (국민은행 사이트 www.kbstar.com)			
5	인터넷 청약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10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신청, 만 30세 이전 혼인의 경우 혼일날부터 신청)		
6	청약대상 아파트와 주택형 선택 (아파트 고유번호 선택,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당사 문의)	11	부양가족 선택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3년 이상 동일 등본상에 부양하고 청약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일 경우 인정]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거주지역 선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12	청약통장 가입기간 자동 산정됨		
8	주택소유여부 선택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13	주소 및 연락처 입력		
9	과거 2년내 가점제 당첨여부 선택 (본인 또는 세대원 중 2017년 10월 17일 이전에 당첨 되었을 경우: 아니오 → 가점제 접수 2017년 10월 18일 이후 당첨되었을 경우: 예 → 추첨제 접수)	14	가점 접수 확인 청약완료		

※ 인터넷 가상체험관 활용

- ①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하단 [인터넷 가상체험관] 메뉴 클릭
- ② 국민은행 홈페이지 상단 메뉴 [특화서비스-주택청약]으로 들어가시면 [청약가이드] 메뉴 클릭

주택형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85m ² 이하	100%	-


청약통장 종류 및 준비사항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가능 여부	○	○	○

※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알면 너무나도 쉬운 청약가점제, 이것만은 꼭!

○ 청약가점제 유의사항

가점항목	가점구분	이것만은 꼭?
무주택 기간 (총점 32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세대원의 범위 :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청약자(배우자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Tip 무주택기간 산정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사례 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01.01 기준 1987년 01월 01일생의 경우. -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실제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 “1년 미만(2점)”으로 입력(O)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부양가족 수 (총점 35점)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 가능.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부양가족 산정사례 ※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임.	Tip 부양가족산정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입니다. 실수사례 예) A씨의 사례 - 입력내용 :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부양가족수는 “0명”(5점)으로 입력(O) 유의사항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 17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실제 인터넷 청약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됨.	

청약가점제 가점산정기준표

○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이상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적용	만 30세 미만인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무주택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본인 제외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청약가점 점수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 본 청약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청약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규정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순위 청약가점제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 체크 시 본인은 제외하시길 바랍니다.(기본점수에 반영됨)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 장인, 장모의 주택도 포함, 단 60세 이상은 무주택으로 간주) 입주자모집공고의 '무주택 판단기준'을 반드시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사항은 부적격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필독)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중당첨 또는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됨. 단,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인한 당첨자발표일 일원화로 동일당첨지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특별공급+일반공급)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제외)처리함.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의 세대구성원(세대주인 배우자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세대주))이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신청자(특별공급)+배우자(일반공급))으로 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나 일반공급 당첨(배우자)은 부적격처리됨. ※ 상기 특별공급 당첨자발표일 일원화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A1블럭과 A2블럭은 별개의 단지이나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합니다. 1개의 단지만 청약가능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